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78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1명)
찬 성 자 :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규남, 김용일, 김지향, 박상혁, 박춘선, 심미경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을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종 용역업체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 따른 사업지연이 우려됨.

○ 이에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 선정 등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구를 명확히 함(안 제73조제1항)

나.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등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사업을 포함한다)”를 “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 당시”로, “미만으로서”를 “미만이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찰공고(재입찰공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신 설>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① ---------- ---------- ---- 따른 시행자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 당시 ---------- 미만이고, ----------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7조를 따른다.

문서번호	2023101600000068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이성배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6.	
회 신 일 : 2023.10.1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제1항의 변경을 통해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같은 조례안 제2항의 신설을 통해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 등도 같은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